〈간이투자설명서〉 기준일: 2025.05.26

한화 LIFEPLUS TDF 2030 증권 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C5095]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투자전략 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국내·국외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자산가격 변동위험, 재간접 투자위험, 국가위험, 자산배분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화 LIFEPLUS TDF 2030 증권 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국외 주식 및 채권관련 증권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노후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투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을 2030년으로 상정하고,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활용합니다.

(2) 설정 초기 시점에는 국내·국외 주식 관련 자산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에 근접할수록 국내·국외 채권관련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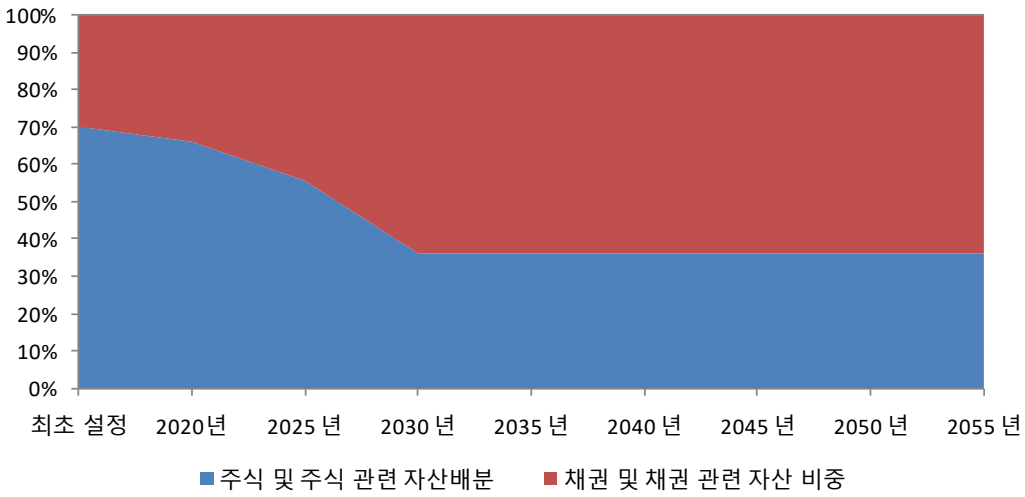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국내·국외 주식 및 채권관련 증권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상세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노후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투자목표를 가진 투자자를 위해 장기 기대수익률, 위험 선호도 변화 추이, 기대 인플레이션 등 장기 금융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자산배분 모델에 따라 자산군별 장기 투자비중을 산출하고, 적절한 시간 구간(Glide Path)에 따라 국내·국외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자산별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활용합니다.

(2) 설정 초기 시점에는 국내·국외 주식 관련 자산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 2030년)에 근접할수록 국내·국외 채권관련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운용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특정 목표시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주된 투자대상인 주식 및 채권 관련 자산의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자산배분 비중은 최초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이며, 장래의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 각 자산의 예상수익 및 위험수준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될 경우 운용전략적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특정 목표시점을 고려한 자산배분 및 기본 포트폴리오 구성은 JPMorgan Asset Management (Asia Pacific) Limited'의 자문을 받으며, 투자대상종목 및 투자비율 등은 한화자산운용이 최종 결정하여 수행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른 해외투자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비교지수: 없음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전환형(종류C-Pu(연금저축) 수익증권에 한함)

투자비용

1) 2020년 1월 1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및비용(단위:%)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0.465	0.19	0.88	0.7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0.805	0.53	1.23	1.095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0.365	0.09	0.61	0.65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535	0.26	0.79	0.82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3년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0.355	0.08	-	0.67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P(퇴직연금))	없음	0.6550	0.38	-	0.97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Pe(퇴직연금))	없음	0.4650	0.19	-	0.79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O(퇴직연금-디폴트옵션))	없음	0.4150	0.14	-	0.7355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2025년 1월 1일부터 투자하는 경우를 가정 / 단위: 천원)

클래스 종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77	257	342	523	1,0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112	230	354	620	1,412
수수료선취-온라인(A-e)	117	187	261	419	89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85	173	267	467	1,06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69	142	219	384	8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P(퇴직연금))	100	206	317	555	1,2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Pe(퇴직연금))	81	166	255	447	1,0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O(퇴직연금-디폴트옵션))	75	155	238	406	874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합성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8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4/01/01~2024/12/31	2023/01/01~2024/12/31	2022/01/01~2024/12/31	2020/01/01~2024/12/31	2018/03/21~2024/12/3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2018-03-21	11.84	12.57	2.48	6.02	6.33
수익률변동성(%)		6.86	6.84	8.38	10.67	9.86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 대표 클래스(A, A-e, C, C-e)가 설정되지 않아 상기 클래스를 기재하였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단위:개,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해외-재간접형) (단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현	1982	책임(팀장)	13	7,030	-	-	5.38	8.96	2년 5개월
이경태	1985	부책임(매니저)	5	387	5.41	7.57			2년
배철한	1991	부책임(매니저)	12	1,731	-	-			1년 3개월

* 기준일: 2025.03.27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table><tr><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 내용</th></tr><tr><td>**원금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td></tr><tr><td>**자산가격 변동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국내·국외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투자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td></tr><tr><td>**재간접 투자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타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기구의 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존 수익자 또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 투자신탁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투자하거나 대체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td></tr><tr><td>**국가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국내·국외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td></tr></table>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자산배분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국내·국외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각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과 괴리가 생기거나 투자한 특정 자산의 손실이 커지는 경우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국가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흥시장국가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흥시장국가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가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신흥시장국가는 법, 사법 및 규제 기반이 계속 발전 중에 있으며 또한 현지 시장 참여자 및 그 거래상대방 모두에게 많은 법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이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불리한 가격으로 자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시장 및 증권거래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 불능 및 지연 등의 가능성이 있고, 상하한폭 변경 등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의 적시성 및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일드채권(High Yield Bond)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해외 채권(하이일드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며, 투자적격등급 채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에 비해 더욱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이일드채권 등 투자등급 이하의 증권은 위험도가 높은 투자 전략으로 간주되며, 여기에는 신용등급이 없는 증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등급, 고수익 증권은 우량등급 증권에 비해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며, 일부 고수익 채무증권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한정된 유동성은 이 투자신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영업일(D+9)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6영업일(D+5)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1영업일(D+10)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table>
<tr><td>과세</td><td>
<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 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able>
· 종류 C-RP(퇴직연금), C-RPe(퇴직연금), S-RP(퇴직연금), J-RPe(퇴직연금), O(퇴직연금-디폴트옵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C-P(연금저축), C-Pe(연금저축) S-P(연금저축), J-P(연금저축), J-Pe(연금저축), C-Pu(연금저축) 수익증권 수익자(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 및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 지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 유의사항
▶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일부가 설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 당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일부를 판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회사에 전환을 원하는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보유 수익증권 중 일부만 전환하는 것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 또는 전환한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에 대하여 일부만 전환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종류 C-Pu(연금저축) 수익증권의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간 전환) 아래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상호간에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횟수는 제한이 없고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투자신탁에서 한화스마트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종류 A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시 매입하게 되는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이후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가 적용됩니다.
<table>
<tr><th>유형</th><th>전환가능 집합투자기구</th></tr>
<tr><td>주식형</td><td>한화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
한화스마트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한화자랑스러운한국기업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한화 헤라클레스 선진국 액티브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종류 C-Pu(연금저축) 수익증권</td></tr>
<tr><td>채권형</td><td>한화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한화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국공채)
한화내일받는단기국공채증권 자투자신탁(채권) 종류 C-Pu(연금저축) 수익증권</td></tr>
<tr><td>혼합주식형</td><td>한화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td></tr>
<tr><td>증권(혼합-재간접형)</td><td>한화 LIFEPLUS TDF 2030 증권 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종류 C-Pu(연금저축) 수익증권
한화 LIFEPLUS TDF 2040 증권 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종류 C-Pu(연금저축) 수익증권
한화 LIFEPLUS TDF 2050 증권 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종류 C-Pu(연금저축) 수익증권</td></tr>
</table>
</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한화자산운용㈜ (대표번호: 02-695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whafund.com)</td></tr>
</table>

<table>
<tr><td>모집기간</td><td>2018년 3월 12일부터 계속 모집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10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td></tr>
<tr><td>효력 발생일</td><td>2025년 6월 5일</td><td>존속 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3">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후취</td><td>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5">판매 경로</td><td>온라인 (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 슈퍼(S)</td><td>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온라인 직접판매 (J-e)</td><td>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 직접판매 (J)</td><td>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로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 rowspan="5">기타</td><td>무권유 저비용 (G)</td><td>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고액 (i)</td><td>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랩 (w)</td><td>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기관</td><td>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변액보험계약, 법</td></tr>
</table>
</td></tr>
</table>

		(f)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기금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S-RP(퇴직연금)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퇴직연금-디폴트옵션(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전환가능 (u)	엄브렐러 전환권이 부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